

비관세장벽 모니터링(일본/도쿄지사)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2022.06]

□ 대일 육류 및 가금류 제품 수출시 위생증명서 첨부 요건

- 육류 및 가금류와 이들의 가공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내 검역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검역증)를 일본 동물검역소 및 후생노동성 산하 식품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 상기 검역증 제출요건에도 불구하고 질병문제로 인해 소고기(생육) 등 제품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도 있으므로 수출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중요사항 : 위생증명서(검역증)상에는 해당제품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반드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식품위생법 제9조 제2항)

1.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제품

- 수입 신고시 수출국의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음
-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제품
 - 식육 및 식육제품(가금육 및 돈육류 등 포함)

2. 식육 및 식육제품

식품위생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축 및 가금류의 고기와 내장 및 이들의 제품(식육제품)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식품 판매용으로 수입해서는 안됨

- 1) 가축 : 소, 말, 돼지, 면양, 염소 (도축장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것), 물소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7조에 규정된 것)
- 2)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식조 처리사업 규제 및 식조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

3) 식육 제품 : 식육제품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것)

☞ 가축 및 가금류의 고기 및 장기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함

☞ 제품 유형 :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로스트치킨, 훈제 소고기, 콘드 비프, 육류가 50%이상 포함된 햄버그, 고기완자, 파테, 테린 등

3. 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식품위생법 제9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 가축 및 가금류의 고기 또는 내장의 경우 해당 가축 또는 가금의 종류, 전조에서 규정하는 제품 (식육제품)의 경우 그 명칭 및 원재료의 고기 또는 내장 종류
- 2) 해당 수출제품의 수량 및 중량
- 3) 수출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소재지)
- 4)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소재지)
- 5) 가축 또는 가금류의 고기 또는 내장의 경우(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제외)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명칭 등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 a. 가축의 경우 도축 검사 (도살 전에 실시하는 생체검사, 해체 전에 실시하는 검사 및 해체 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이하 동일)를 실시한 기관의 명칭 또는 도축검사를 한 직원의 관직 및 성명
 - b. 가금류의 경우 식조 검사 (생체검사, 날개 제거후 검사 및 내장 적출후의 검사를 말함. 이하 동일)를 실시한 기관의 명칭 또는 식조검사를 한 직원의 관직 및 성명
- 6) 다음에 열거하는 도살 등이 실시된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 a. 가축의 고기 및 내장(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제외)의 경우 도살 및 해체가 이루어진 도축장
 - b. 가금류의 고기 및 내장(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제외)에 있어서는 도살, 날개 제거 및 내장 적출이 실시된 식조 처리장

- c.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가축 또는 가금류의 고기 및 내장육의 경우 해당 처리가 실시된 시설
 - d. 전조에 규정하는 제품(식육제품)에 있어서는 당해제품이 제조된 제조소
- 7) 전호 기호a부터 d까지 규정된 도살, 해체, 날개 제거, 내장 적출,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
- 8) 다음에 열거하는 도살 등이 실시된 연월
- a. 가축의 고기 및 내장(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제외)의 경우 도살 및 도축검사
 - b. 가금류의 고기 및 내장(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제외)의 경우 도살 및 식조 검사
 - c.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가축 또는 가금류의 고기 또는 내장의 경우 해당 처리 내용
 - d. 전조에 규정된 제품(식육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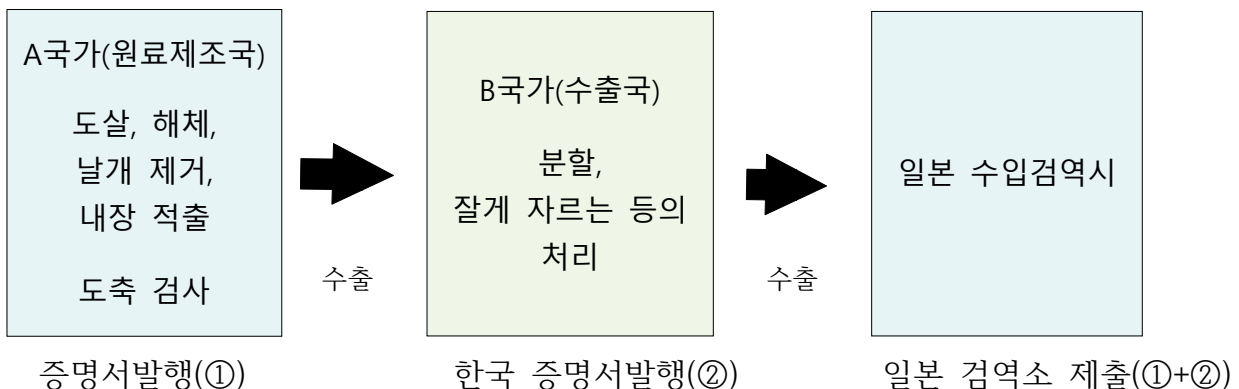
4. 증명서 접수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인도(가금류에 한함), 인도네시아 (가금류에 한함), 바누아투, 베트남 (가금류에 한함),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영국, 에콰도르,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가금류에 한함) ,산 마리노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에서 도축 처리 된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싱가포르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 고기에 한함),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돼지고기에 한함), 태국, **대한민국**, 대만, 체코 (돼지고기에 한함), 칠레, 중국, 덴마크, 독일, 터키 (가금류에 한함), 니카라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헝가리, 필리핀, 핀란드, 브라질, 프랑스, 불가리아 (가금류에 한함), 페루 (가금류에 한함),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온두라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2019년 10월 4일 현재)

5. 수출국 이외에서 도축 또는 가금류 검사가 실시된 것

- 식품 위생법 제9조 제2항의 증명서가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도축 검사가 실시된 가축의 고기와 내장 또는 가금류 검사가 실시된 가금류의 고기와 장기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도축 검사 또는 가금류 검사를 실시한 국가의 정부 기관이 발행한 전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사본도 증명서에 같이 첨부 해야 한다.
- 수출국(B국가) 이외의 제3국(A국가)에서 도축검사 또는 가금류 검사가 실시된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된 경우, 제3국(A국가)에서 발행된 증명서는 B국가를 전제로 한 기재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부족한 정보를 수출국 정부 기관에서 별도 발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시 되며, 수출국(B국)에서의 위생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원료수입국(A국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번호를 기재하여 추적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참고 : 서류 제출 이미지>



(사본) Health Certificate No.ABC123 B국가 대상의 증명서 + 일본대상의 기재사항 (필수)	Health Certificate No.DEF456 일본수출용 기재사항 (필수) + A국가에서 발행된 증명서 번호기재 <u>No.ABC123</u>	Health Certificate No.DEF456 일본수출용 기재사항 (필수) + A국가에서 발행된 증명서 번호기재 <u>No.ABC123</u>	<사본> Health Certificate <u>No.ABC123</u> B국가 대상의 증명서 + 일본대상의 기재사항 (필수)
--	--	--	---

※ 자료원 : 일본 오사카 검역소

<https://www.forth.go.jp/keneki/osaka/syokuhin-kanshi/todokedetetuduki3.html#fugu>

6. 시사점

- 최근 대일 수출된 돈육 스팸(캔통조림 멸균제품)에 대해 일본 검역소에 서는 한국검역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상에 "제품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관이 불허된 사례가 있음으로 반드시 동 내용까지 포함하여 기재가 되도록 주의가 필요시 됨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신선 청고추 잔류농약 위반 사항 발생

- 위반품목 : 신선 청고추
- 수 출 자 : WOOSANG CO.,LTD.
- 수 입 자 : 문혜숙
- 위반성분 : 헥사코나졸 0.04ppm검출/ 기준치 0.01/
- 동성분은 현재 한국산 신선청고추에 대해서 명령검사 상태 성분임
- 검사종류 : 명령검사(매회 수입시 마다 검사해야 됨)
- 위반발표일 : 2022.07.07
- 향후처리 : 전량 창고 보관 상태로 폐기 추정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s://www.mhlw.go.jp/content/000960574.xls>

2. 시사점

- 한국산 청고추는 현재 헥사코나졸 등 3개 농약 성분에 대해 매회 수입 시 마다 잔류농약 검사 결과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통관이 허가됨으로 사전에 일본 잔류농약기준치에 맞추어 이상 없는 제품만을 수출하도록 주의가 필요시 됨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2.6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모두 78건이 발생함 (식기류 제외)
 - 6월의 한국산 식품 위반사례는 레토르트 소고기 미역국에서 발육 가능한 미생물 양성으로 위생 위반 1건이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균제 등 위반사례가 12건(15.4%), 아플라톡신 위반이 24건(30.8%), 대장균군 양성 및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 위생위반이 26건(33.3%), 첨가물 위반이 13건(16.7%), 기타 3건(3.8%) 으로 나타나 위생 위반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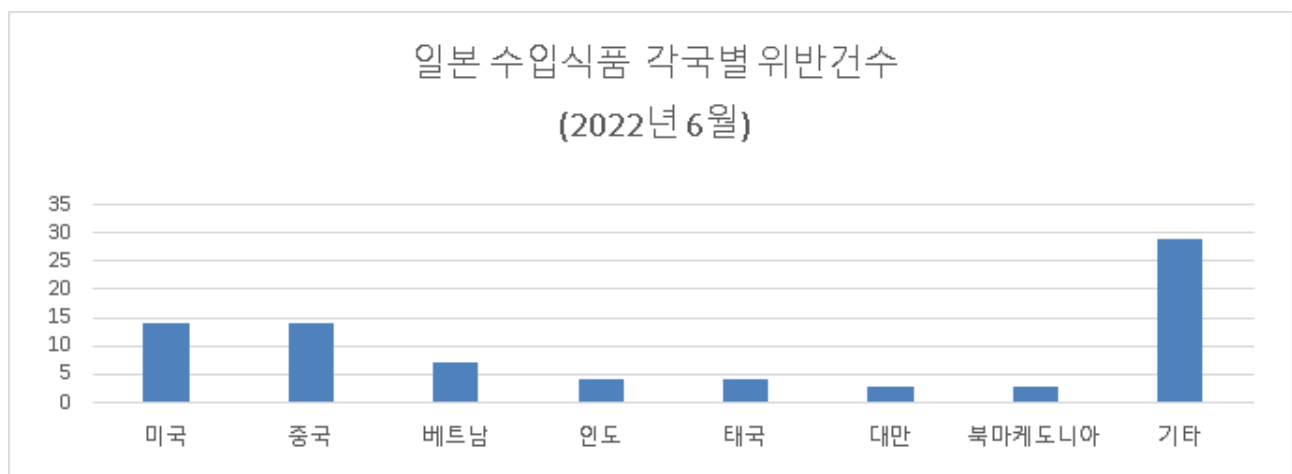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6월의 위반건수는 14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중국과 함께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 중 17.9%를 차지함

- 생 아몬드 등 견과류 및 옥수수, 건조 대추야자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12건, 식물유래 건강식품에서 첨가물 위반 2건 등 계 14건의 위반이 발생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6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4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미국과 함께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 중 17.9%를 차지함
 - 볶은 땅콩류와 해바라기씨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5건, 소바, 맵쌀에서 곰팡이 발생 및 냉동 생선류와 레토르트 제품, 가열후 포장 말고기 등에서 세균수 부적격으로 위생 위반 6건, 신선 양파에서 잔류 농약 위반 사례 2건, 유케마 해조류 가공품에서 순도시험 부적합 위반사례 1건 등 계 14건의 위반이 발생함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냉동 잭프루트에서 대장균군 양성으로 위생 위반 1건, 냉동의 새우, 채소, 카옌 고추에서 잔류 농약 위반 3건, 파이류, 조미료 등 2건의 첨가물 위반, 기타 냉동 카사바에서 시안화합물 검출 1건 등 계 7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함
- **인도 및 태국 수입식품 위반 사례**
 - 태국은 위생 위반 4건, 인도는 잔류 농약 2건, 아플라톡신과 첨가물 위반 각 1건씩 계 4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대만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조미료에서 첨가물 위반 2건, 반발효차에서 잔류농약 위반 1건 등 계 3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항균제등	아플라 톡신	위생	첨가물	기타	기타
미국	14	17.9		12		2		0
중국	14	17.9	2	5	6		1	0
베트남	7	9.0	3		1	2	1	0
인도	4	5.1	2	1		1		0
태국	4	5.1			4			0
대만	3	3.8	1			2		0
북마케도니아	3	3.8				3		0
기타	29	37.2	4	6	15	3	1	0
합 계	78	100.0	12	24	26	13	3	0
비율(%)			15.4	30.8	33.3	16.7	3.8	0.0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